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주)OO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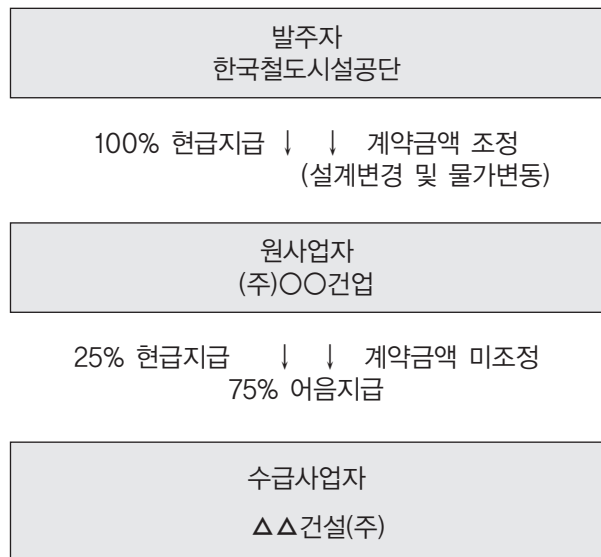
□ 범위반 내용

(주)OO건설은 수급사업자인 △△건설(주)와 체결한 '수청하북역사 신축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 발주자로부터는 100% 현금으로 원도급대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인 △△건설(주)에게는 2006. 4. 30까지의 기성금 11억5,780만원에 대하여 25%는 현금(2억9,015만원), 75%는 어음(8억6,765만원)으로 지급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지 않고

△또한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 조정받은 후, △△건설(주)에게는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출한 하도급대금(설계변경 미조정분 3,087만원, 물가변동 미조정

분 2,228만원)을 법정조정기일(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해주지 않음



□ 시정명령 내용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증액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적용법조

①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원사업자는 건설위탁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 기대효과

하도급법상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



아름다운 지원자 - 메세나

‘메세나’란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 활동, 즉 문화 예술이나 스포츠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메세나(mecenas)는 프랑스 어로 문화 예술의 보호 운동에 헌신했던 고대 로마의 대신 마에케나스(Ga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마에케나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총신이었는데, 그는 당대의 대(大)시인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등을 극진히 보호해서 로마의 예술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마에케나스’의 프랑스 식 이름인 ‘메세나’를 처음 쓴 것은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되면서부터였다.

메세나는 기업의 자선과 사회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이를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활동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GAN영화재단의 영화 산업의 지원활동이다. 프랑스의 보험 그룹인 GAN은 1987년 칸느영

화제를 기념으로 영화 재단을 공식 발족시켜 영화광인 젊은 소비계층에게 보다 친숙한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특히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등을 비롯해서 ‘메세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에 철저한 기업 중심의 메세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밖에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유럽의 기업들도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했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 지원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겼다.

“문화는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문화는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닌 향유하는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